

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1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7. 11. .
제 출 자 : 속 초 시 장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개정(2007. 5. 11, 법률 제8423호)됨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근거법령 조문 변경(안 제1조)
「지방자치법」 제133조 →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규 : 4쪽
- 나. 예산조치 : 비예산
- 나. 기 타
 - 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 - 2) 입법예고 :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

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3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 133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」,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(이하“기금”이라 한다)의 조성·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 142조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관계법령 발췌

◆ 지방자치법 (개정전)

제133조 (재산 및 기금의 설치)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,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③제1항에서 "재산"이라 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.

◆ 지방자치법 (개정후)

제142조 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③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